

[붙임4]

## 신입직원 채용 우대가점 적용 세부내용

### □ 법정가점

구 분	가점	비고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	법률에서 정하는 비율 (각 전형별 만점의 5% 또는 10%)	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
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		
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		
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		
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		
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		

※ 관련 법령에 따라 모집인원 4명 이상 직렬에 한해 가점 적용

### □ 특별가점

구 분	가점	비고
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	각 전형별 만점의 3%, 5%	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
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	각 전형별 만점의 5%	

※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라 의사상자(본인), 의사자의 배우자·자녀는 서류·필기·면접전형 만점의 5% 부여, 의사자의 배우자·자녀는 서류·필기·면접전형 만점의 3% 부여

### □ 자격가점

구 분		가점	비고
사무직 6급·8급	변호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, 공인노무사	서류전형 면제, 필기전형 만점의 5%	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
기술직 6급·8급	지원하는 직렬별 서류평가 기준의 해당분야 기술사		

※ 우대가점 자격증 2개 이상 보유자도 1개만 가점 인정

※ 제한경쟁채용 6급의 경우 자격가점 미부여

## □ 공단 경력가점

구 분			가점	비고				
한국환경공단 체험형인턴('23년, '24년에 한함) 수료자 * 중도 퇴사자는 인정 불가, 채용 공고 시작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수료자에 한함 * 근무평가를 통한 우수 인턴, 수료자에 한해 경력가점 차등 부여(6개월 이상 수료자 3점, 그 외 2점)			(일반인턴) 서류전형 만점의 2%~3% (우수인턴) 서류전형 만점의 5%	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				
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체험형인턴</th> <th>우수인턴</th> <th>수료자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서류전형 가점(%)</td> <td>5</td> <td>2~3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체험형인턴	우수인턴			수료자	서류전형 가점(%)	5	2~3
체험형인턴	우수인턴	수료자						
서류전형 가점(%)	5	2~3						
한국환경공단 근무경력(일반직, 공무원, 기간제 근로자 등) 6개월 이상인 자(단, 체험형 인턴 근무기간 제외) * 하단의 근무기간별 배점기준 참고			서류전형 만점의 5% 이내, 필기전형 만점의 10% 이내					

공단 근무 기간	6개월 이상 ~ 12개월 미만	12개월 이상 ~ 24개월 미만	24개월 이상
서류전형 가점(%)	3	4	5
필기전형 가점(%)	6	8	10

※ 근무 기간은 합산하여 산출하며,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하고, 15일 미만은 버림(예, 11개월 15일 = 12개월, 11개월 14일 = 11개월)

※ 체험형인턴 가점과 공단 근무경력 가점은 중복인정 불가

※ 근무기간은 채용 공고 시작일까지 인정

## □ 저소득층

구 분	가점	비고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(생계, 주거, 교육, 의료급여 중 한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)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	서류전형 만점의 5%	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
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		

## □ 북한이탈주민

구 분	가점	비고
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북한이탈주민등록자	서류전형 만점의 5%	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

## □ 다문화 가정 자녀

구 분	가점	비고
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다문화가족 자녀이며,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국어 구사가 자유로운 사람	서류전형 만점의 5%	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

## □ 경력단절여성

구 분	가점	비고
「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」에 따라 혼인·임신·출산·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의 사유로 공고시작일 기준 경력단절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여성	서류전형 만점의 5%	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

※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하고, 15일 미만은 버림

## □ 자립준비청년

구 분	가점	비고
▪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로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(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)	서류전형 만점의 5%	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

## □ 기타

- (가점 계산 방법) 가점 항목별(법정가점, 특별가점 등) 가점은 합산이 가능하며 최대 15% 내에서 적용(항목내 합산은 불가), 전형단계별로 평가점수가 만점의 4할 이상(다만, 필기전형이 ‘직업기초능력평가’와 ‘직무수행능력평가’ 등 시험 과목이 2개 이상일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) 득점자에 한하여 가점 적용함
- (최종합격자 선정시 가점 반영) 가점 적용된 필기점수(30%)와 가점 적용된 면접점수(70%)를 합산한 종합점수로 평가(추가 가점 적용 불가)
- (증빙서류) 반드시 일정 제출기간 내 증빙서류(사본) 제출 해야만 지원자격 확인, 가점부여, 서류전형 면제 등 적용 가능
  - ※ 제한경쟁채용 6급의 경우 입사지원 시 제출